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4일, 김주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사회)

제2차 전체회의(202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
정가결)

제2차 전체회의(2025.9.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주영의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기업·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

절, 재해 방지 등 환경조절서비스 등의 혜택을 말함¹⁾.

현행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 상대방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예산 현황]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비	1,694백만원	2,354백만원	3,838백만원	4,038백만원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방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자체수	27개 시·군	30개 시·군	30개 시·군	30개 시·군
사업수	28개소	31개소	32개소	34개소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운영 중

※ 출처: 환경부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와 인류 사회가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추진에 따라 기업의 ESG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환경보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기업, 단체 등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생태계 보전활동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은 자연환경 국민신탁을 설립하여 기업, 단체 등이 기부하거나 위탁한 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자산 취득 및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도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³⁾,

현행법이 기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도 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지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약)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약 방식을 추가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신설하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대한 총괄적 지원 조항 및 관련 위임 조항 등 운영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안 제16조의2 및 안 제16조의3)

수정주요내용

- 가.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약 방식을 추가하고 기존 계약방식을 구체화함(안 제16조제4항 및 안 제16조의2제1항)
- 나. 민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시에도 계약 이행 상대방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준용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2제2항)
-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정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대해서도 총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 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관련 위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6조의3제3항부터 제7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안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태계서비스”를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로,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결하는 방식”을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센터에”를 “지원센터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등록하고 관리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인정, 등록 및 관리”를 “인정 및 관리”로 한다.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본다.

안 제16조의3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마련 및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생태계서
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생태계서
비스지불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
스지불제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

2. 제16조의3에 따
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지원
센터에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
을 기탁하는 방

-----제16조 제1
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
스-----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식-----

-----.

1. -----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2. -----

-----지원
센터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인 또는 민

	<u>식</u>	<u>간단체 등과 생</u> <u>태계서비스지불</u> <u>제계약을 직접</u> <u>체결할 수 있도</u> <u>록</u>----- ----- -----
	<u><신 설></u>	3. <u>그 밖에 환경부</u> <u>령으로 정하는</u> <u>방식</u>
	<u><신 설></u> <u>② 환경부장관은</u> <u>생태계서비스지불</u>	<u>② 제1항에 따라</u> <u>민간 또는 생태계</u> <u>서비스지불제 계약</u> <u>지원센터가 생태계</u> <u>서비스지불제 계약</u> <u>을 직접 체결하는</u> <u>경우 제16조제2항</u> <u>및 제3항을 준용한</u> <u>다. 이 경우 “정부</u> <u>또는 지방자치단체</u> <u>의 장”은 “민간 또</u> <u>는 생태계서비스지</u> <u>불제계약 지원센</u> <u>터”로 본다.</u> <u>③ (개정안 제2항과</u> <u>같음)</u>

세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
라 생태계서비스지
불제계약에 참여하
는 경우 생태계서
비스 유지·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하여야

⑤ -----제4

항-----

-----인정 및 관

리-----

-----.

<신 설>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지원 센터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
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
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지원 센터 지정·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illegible]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센터는 민간이 참여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

	<u>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u>항</u> <u>4. 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1. 제3항에 따른 지</u>
--	---	---

		<u>침을 위반하여</u> <u>운영한 경우</u>
		<u>2. 지정목적을 달성</u> <u>하기 어렵거나</u> <u>운영실적을 평가</u> <u>한 결과 실적이</u> <u>부실하여 유지하</u> <u>는 것이 부적절</u> <u>한 경우</u>
		<u>3. 그 밖에 지원센</u> <u>터를 계속 유지</u> <u>할 필요가 없다</u> <u>고 인정되는 경</u> <u>우로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경</u> <u>우</u>
	<u>④ 환경부장관은</u> <u>지원센터의 업무수</u> <u>행에 필요한 비용</u> <u>을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⑥ (개정안 제4항과</u> <u>같음)</u> <u>⑦ 제1항부터 제6</u> <u>항까지에 따른 지</u> <u>원센터의 지정, 지</u> <u>정 취소, 업무지침</u> <u>마련 및 기부금품</u> <u>의 접수절차 등에</u>

		<u>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한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에 부실하여 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 지침 마련 및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 ③ (생략)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u> ----- -----.
⑤ (생략) <u><신설></u>	⑤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u> <u>1.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u>

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관 협

<신 설>

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

	<u>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u>
	<u>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 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3.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 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4. 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 등 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 항</u>
	<u>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 제계약의 효율적 운영·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 련하여야 한다.</u>
	<u>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 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u>
	<u>1. 제3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 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한 경 우</u>
	<u>2.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u>

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마련 및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